

「신한카드 법인회원약관」 개정 안내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약관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안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개정(案) 신 · 구조문 대비표

※ 개정사유 : 공정위 시정유형 자체점검에 따른 개정 등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약관 내용	제5조(유효기간 및 갱신발급) ①~⑤ (생략) 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⑦~⑨ (생략) 제7조(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① (생략) 1.~7. (생략) 8. 영업양도 또는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9.~11. (생략) ②~⑥ (생략)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⑫ (생략)	제5조(유효기간 및 갱신발급)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⑦~⑨ (현행과 같음) 제7조(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휴업·폐업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9.~11. (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⑫ (현행과 같음)	중복 안내 방지를 위한 문구 추가 공정위 시정유형 자체 점검에 따른 개정 2. 사업자가 주된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 관점에서 비현실적인 카드 반납 문구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약관 내용	제10조(회원 및 카드의 이용한도)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생략)	제10조(회원 및 카드의 이용한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현행과 같음)	중복 안내 방지를 위한 문구 추가
	제12조(할부철회권) ① 회원은 할부계약을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생략)	제12조(할부철회권) ① 회원은 할부계약을 교부 받은 날(단, 할부계약을 교부받은 날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할부거래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내용 일치화
	제16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법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6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으로 적립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분에 대한 포인트 개선방안 반영 ※금감원 보도자료,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3.26.) 단서문구는 별도 분리하여 향내림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약관 내용	② (생략) ③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⑤ (생략)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제공합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취소분에 대한 포인트 개선방안 반영 중복 안내 방지를 위한 문구 추가
	⑦~⑪ (생략) <신설>	⑦~⑪ (현행과 같음) ⑫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법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항 일부 조문을 항내림하여 제12항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약관 내용	제19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생략) 1. 영업양도 또는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2.~4. (생략) ②~④ (생략)	제19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현행과 같음) 1. <u>휴업·폐업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 기 어려운 경우</u> 2.~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공정위 시정유형 자체 점검에 따른 개정 5. 부당한 기한의 이 익 상실 조항
	제 27조(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① ~ ② (생략) ③ 카드사와 연대보증인은 본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및 보 증기간(법인유효기한 등)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 ⑥ (생략)	제 27조(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카드사와 연대보증인은 본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및 보 증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근보증서 내용 반영
	제32조 (변경승인 등) ① (생략)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 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 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 (FAX)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 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 드립니다. ③~⑤ (생략)	제32조 (변경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 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 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 (FAX) 중 <u>서로 다른 2가지</u>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 드립니다. ③~⑤ (현행과 같음)	중복 안내 방지를 위 한 문구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부칙	제1조(시행일) (2021. 9. 25) 이 약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제4호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6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	제1조(시행일) (2021. 9. 25) (현행과 같음)	약관변경에 따른 부칙 반영
	제1조(시행일) (2023. 8. 1)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2023. 8. 1) (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 (2024. 2. 29) 이 약관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2024. 2. 29)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조(시행일) (2025. 6. 1)</u> <u>이 약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u>	